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사립학교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자	국무총리 (○○○소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사립교원의 육아휴직 등에 대하여 육아휴직 등의 기간과 휴직 교원의 처우에 대해 규정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추가 휴직 교원의 처우에 대해 규정하고자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육아·입양휴직 사유로 휴직 시 국공립 교원 규정을 준용(안 제24조의11) 경력평정, 육아휴직 수당 등 처우 관련 사항에 대해 국공립 교원에 적용 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11(육아휴직 교원의 처우) 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교원의 신분 및 처우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9.25. 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11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육아휴직·입양휴직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 따른 승급기간의 특례 및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1호나목에 따른 경력의 기간 계산에 관한 내용은 이 영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영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4조의11(육아휴직 교원의 처</u> <u>우) 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u> <u>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u> <u>교원의 신분 및 처우는 국공립</u> <u>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u> <u>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원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940